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6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함. 이에 투자자 보호의 중요수단 중 하나인 공시규제 위반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과징금 등의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제4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을 신설하고, 이사 또는 업무집행 지시자 등에 대해서도 공모규제 회피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고려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함

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2 제2호, 제4호)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에 5%를(지분) 공시위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과 과징금 상·하향 조정사유를 개선하는 등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다. 정기보고서 공시규제 상습 위반시 제재 강화(안 별표3 제3호)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기타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 동일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발행인 외의 자(인수인·주선인 등)에 대해서도 최저부과액(법정최고액 50% 이상) 적용 대상인 경우 최저부과액 이상 부과되도록 개선함
- 온라인소액증권(클라우드펀딩)은 발행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 과태료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선함
-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재무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산정시 중요도 판단기준을 외감법상 기준(감사보고서 적용)과 동일하게 개정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